

항공우주박물관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4.7.1		16		
2	2009.9.1		17		
3	2014.9.1		18		
4	2014.10.23.		19		
5	2018.6.15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항공우주박물관 규정

- 제1조** (명칭) 이 박물관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함)이라고 하고 한국항공대학교 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
- 제2조** (목적) 이 규정은 박물관의 운영, 전시물·영상장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** (직무) 박물관은 국내·외의 항공 및 우주에 관한 제반 자료를 수집, 정리 및 전시 함은 물론 영상물을 상영하여 본 대학교 구성원 및 일반인의 관람에 이바지 하며, 자료의 조사, 연구, 교육 및 학습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제4조** (관장) ①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 한다.
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** (조직) ① 삭제<2018.6.15>
② 박물관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, 전시품 수집, 전시기획 등의 학예업무를 담당한다.<개정 2014.10.23.>
③ 안내 및 관리를 위하여 근로학생과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 근로학생과 자원 봉사자에게는 소정의 근로장학금 및 식대 등을 지급할 수 있다<신설 2014.10.23.>
- 제6조** (전시품 및 영상장비의 관리) ① 박물관의 전시품 및 영상장비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.
② 박물관의 직원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전시품, 영상장비, 영상물을 촬영, 실측,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.
③ 박물관의 전시품, 영상장비, 영상물은 분기마다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** (변상) 관람객이 박물관의 전시품, 영상장비, 영상물, 시설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 평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, 관리소홀로 인해 전시품의 분실, 영상장비의 도난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평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8조** (관람시간)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②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- 제9조** (관람자 준수사항)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①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 및 영상장비 등에 손을 대지 못한다.
②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, 영상장비, 영상물의 촬영 또는 모사를 금한다.
③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.
④ 박물관내에서는 잡담 및 흡연을 금한다.

제10조 (휴관일) 본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

1.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
2.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

제11조 (운영위원회) ①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인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18.6.15>

-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8.6.15>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박물관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박물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3. 박물관 규정의 개정 관한 사항
4.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- 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 후 시행한다.

제12조 (자문위원회) 삭제<2018.6.15>

제13조 (입장료의 징수 및 기념품 관리) ①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.<개정 2018.6.15>

- ② 입장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는다.

- ③ 기념품 관리 및 판매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여 운영한다.<신설 2018.6.15>

제14조 (특별프로그램 운영) 항공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 (운영세칙) 기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